



뉴스요약

1. 7월 1일부터 특허출원비용, 연차료 등에 대한 감납 확대
2. <민상사 사건 심리기한 연장과 개정 연기 문제 규범화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에 대한 개정 결정
3. 국가지재권: 특허심사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의견수렴안)

7월 1일부터 특허출원비용, 연차료 등에 대한 감납 확대

4월 3일 국무원 총리 리커창의 진행하에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렸다. 기업에 대한 요금을 경감하고, 실물경제 원가를 낮추고, 광대역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디지털 경제발전과 정보 소비를 추진하며, 귀국한 해외유학인원의 창업 혁신을 지지하는 조치를 확정하여 인재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월 1일부터 특허 등기비용 등 요금 징수를 중지하고, 특허 연차료의 감납 기한을 연장하며, 상표 갱신 등록료 비용 기준이 1000위안으로부터 500위안으로 낮춘다. 물류, 에너지 등 요금에 대하여 정리하고 규범화시킨다. 일반 상공업 전기비용이 평균 10% 낮추도록 하고 하강효과는 제3자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차의 연간 검사와 심사의 합병을 가속화하고 항구, 고속도로, 천연가스 소송 배급 등 요금을 낮출 것을 추진한다. 이상 조치는 기업부담을 1년간 3000억위안 이상 경감할 수 있다.

귀국한 해외유학인원에 대한 창업 우대조치를 실행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등 창업 용자를 지지

한다. 상표등록의 간편화를 추진하고 기업 수출의 자질심사 절차를 최적화하며 과학기술 성과를 응용으로 전환할 것을 지지한다.

회의에서는 <행정허가법>, <상표법>, <건축법>, <전자사인법> 등 법률개정안 초안이 통과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의견에는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행원칙에 무차별원칙을 추가하고,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권리침해 배상액을 대폭 증가시키며, 조건에 부합되는 공사허가증 신청에 대한 심사시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상사 사건 심리기한 연장과 개정 연기 문제 규범화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에 대한 개정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민상사 사건 심리기한 연장과 개정 연기 문제 규범화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에 대한 개정 결정은 2019년 2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62차 회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3월 27일

< 민상사 사건 심리기한 연장과 개정 연기 문제 규범화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아래 <규정>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규정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연장을 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은 불가항력 또는 의외의 사건에 의하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를 추가한다.
2. 제3조 규정 “인민법원은 개정심리 기간연장 횟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일반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상사 사건의 개정심리 기간연장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이절차 및 소액속재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상사 사건의 개정심리 기간연장 횟수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제4조 규정을 추가하며 4항으로 나뉜다. “기층인민법원 및 해당 법원의 파출 법정에서 심리하는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며, 분쟁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상사 사건은 간이절차를 적용한다”, “기층인민법원 및 해당 법원의 파출 법정에서 심리하는 전항 규정에 부합되며 목적액이 각성, 자치구, 직할시 상반기 취업자 연평균 월금의 2배 이하인 민상사 사건은 간이절차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법률 및 사법해석에서 규정한 간이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한다”,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민상사 사건의 증거교환, 재판전 회의 등 재판전 준비 절차와 재판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별도로 조직하지 않는다”,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공시송달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규정> 제2조의 “재차 개정”을 “기간연장하여 개정심리하다”로 수정한다.
5. <규정>의 조항 순서에 대하여 조정한다. 즉, “제2조”를 “제5조”로, “제3조”를 “제6조”로, “제4조”를 “제7조”로, “제5조”를 “제8조”로, “제6조”를 “제9조”로 조정한다.

본 결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민상사 사건 심리기한 연장과 개정 연기 문제 규범화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1조 인민법원은 민상사 사건 심리시, 심리기한에 대한 법률 및 사법해석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1심사건의 심리기한은 6개월이고,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1심사건의 심리기한은 3개월이다.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리기한은 3개월이고, 재정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리기한은 30일이다.

법률이 규정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심리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단독 판사 또는 합의정은 기간만료 15일전에 본 법원 원장에게 신청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원장은 기간만료 5일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원 원장의 비준을 거쳐 심리기한을 연장을 하고 여전히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 재차 연장하여야 할 경우, 기간만료 15일전에 상급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기간만료 5일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조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연장을 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은 불가항력 또는 의외의 사건에 의하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개정심리 기간연장 횟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일반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상사 사건의 개정심리 기간연장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이절차 및 소액속재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상사 사건의 개정심리 기간연장 횟수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기층인민법원 및 해당 법원의 파출 법정에서 심리하는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며, 분쟁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상사 사건은 간이절차를 적용한다.

기층인민법원 및 해당 법원의 파출 법정에서 심리하는 전항 규정에 부합되며 목적액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상반기 취업자 연평균 월금의 2배 이하인 민상사 사건은 간이절차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법률 및 사법해석에서 규정한 간이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한다.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민상사 사건의 증거교환, 재판전 회의 등 재판전 준비 절차와 재판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별도로 조직하지 않는다.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공시송달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인민법원이 민상사 사건을 개정심리한 후 기간연장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다음번 개정시간을 알려야 한다. 두차례의 개정 간격은 1달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불가항력 또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단독 판사 또는 합의정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개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본 법원 원장에게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인민법원 인터넷 공개심판 절차 정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사건 입안시간, 심리기한, 심리기한에 대한 공제, 연장, 재계산, 기간연장하여 개정심리하는 상황 및 사유를 적시에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법원에게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고의적으로 법률, 심판규률, 심판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실로 사건 처리를 지연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인민법원 근무자 처분 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본 규정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전에 발포한 사법해석 및 규범적 서류와 본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지재권: 특허심사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의견수렴안)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심사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의견수렴안)> 및 그 설명을 공포하여 2019년 5월 5일 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요 개정 내용

1. 발명 특허출원 방식심사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제1부분 제1장 제5.1.1, 6.7.2.2절)

1) 심사의견에 따라 제출하는 재차 분할출원의 제출기간을 명확히 함(제5.1.1절(3))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분할출원이 단일성 결함이 존재하거나 출원인이 심사의견에 따라 재차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오직 출원인은 심사관이 발급한 단일성 결함을 지적한 심사의견 통지서 또는 분할출원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명확히 규정하였다. 하지만 재차 분할출원의 제출기간에 대하여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 업무중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제1부분 제1장 제5.1.1절 (3)에서 진행되었으며, “재차 분할출원의 제출기간은 단일성 결함이 존재하는 해당 분할출원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는”것 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사표준을 명확히 하여 이해상의 차이를 해소하였다. 이외에, “규정에 부합되는 심사의견통지서 또는 분할출원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외된 경우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 “사건을 종결 처리하다”를 삭제하여 문장을 더욱 간결하게 하였다.

2) 분할출원 출원인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제5.1.1절(4))

이번 개정은 현행 <가이드라인> 중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과 불일칠할 경우, 출원인 변경 관

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출원인은 분할출원 제출시의 원출원의 출원인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분할출원에 대하여 재차 분할출원을 제출한 출원인은 해당 분할출원의 출원인이여야 한다. 방식심사중 상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분할출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동시에 발명자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적합하게 개정하였다.

또한, 분할출원 또는 재차 분할출원을 제출할 시의 출원인 서지사항 변경 관련 수속에 대하여 규범화하였다. 즉, 만약 원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권(또는 특허권)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 원출원의 서지사항 변경수속이 합격된 후 분할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분할출원의 출원권(또는 특허권)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 분할출원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서지사항 변경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권리이전 관련 증명서류에 대한 규정을 개정(제6.7.2.2절(2))

양도 또는 증여계약서가 당사자의 진실된 의사 표현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양도와 증여계약서에 쌍방이 사인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양도 또는 증여 쌍방의 주체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을 나열하였다.

2.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제품 디자인 내용에 대한 개정(제1부분 제3장 4.2, 4.3절, 새로 추가된 4.4절)

2014년 3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개정하여(제68호국령), 전기가 통한 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표시되는 제품을 디자인 보호 객체 범위내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심사규칙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제품 디자인 발전 추세에 부합하게 함과 동시에 기존의 심사규칙의 활용성을 높이고 심사관과 출원인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그래픽 유

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제품 디자인 심사규칙 중 제품명칭, 도면 제출과 요약설명 내용을 <가이드라인> 제1부분 제3장 제4.4절로 병합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품명칭, 디자인 그림 또는 사진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하였으며 도면 제출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간략하였다.

3. 발명 특허출원 실제심사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제2부분 제4장 제3.2.1.1, 6.4절, 제8장 제4.2, 4.10.2.2절)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고품질 특허출원으로 안내하며 특허출원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명 특허출원의 실제심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였다.

첫째, 제2부분 제8장 제4.2절을 개정하여 심사관이 발명의 일반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규범화하였다.

둘째, "삼보법(三步法)"의 진보성 평가 관련 규정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오직 구별특징의 일반 작용 또는 인용문헌의 작용에만 근거하여서는 아니되며 먼저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이 도달할 수 있는 기술효과에 근거하여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문제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삼보법"을 적용하여 진보성을 평가할 경우, 기능상에서 서로 뒷받침하고 상호작용 관계가 존재하는 기술특징에 대하여 상기 기술특징과 그 사이의 관계가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에서 도달한 기술효과를 전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2부분 제4장 제3.2.1.1절)

셋째,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고품질 특허출원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진보성을 평가할 시 청구항 중 기술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기술특징은 청구항이 한정한 기술방안이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 중 "기술문제"는 통상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제시한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문제 또는 심사과정에서 확정한 발명이 실

제로 해결하는 기술문제를 말한다. 또한 대응하게 하나의 실례를 추가하였다.(제2부분 제4장 제6.4절)

넷째, 사회 수요에 대응하고 심사관의 진보성에 대하여 평론할 시 공지상식에 대한 인용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만약 출원인이 심사관이 인용한 공지상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경우 심사관은 우선 대응한 증거를 제공하여 입증 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구항 중 기술문제의 해결에 기여를 한 기술특징을 공지상식으로 판단할 경우, 심사관은 통상 증거를 제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제2부분 제8장 제4.10.2.2절(4))

4.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제2부분 제7절 제2, 5, 6, 8.1, 10, 12절)

실제 심사중에서 총결한 조사 관련 유익한 경험을 공고히 하고 심사관의 조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제2부분 제7장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사용 조사자료의 형식과 유형, 조사과정과 조사전략 표준의 재작성, 조사의 최저한도 데이터 베이스를 규정하여 조사중지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조사가 불필요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보완, 조사정보 기록에 대한 규범 등 내용에 관한 개정이 포함되어져 있다.

5. 인터뷰, 전화토론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제2부분 제8장 제4.11, 4.12, 4.13절)

1) 전화토론 및 기타 방식 관련 규정을 개정(제4.11, 4.13절)

심사관과 출원인의 교류 효율을 제고하고 발명과 종래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를 촉진하며 심사 품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전화토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토론 시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다. 심사의 속행 절차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모두 전화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2) 토론 내용의 범위를

넓히다. 토론 범위가 형식적인 문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과 종래기술에 대한 이해 또는 출원에서 존재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3) 전화토론은 출원인과 심사관에 의해 시작할 수 있다. (4) 전화토론 등 방식과 인터뷰를 병렬시켰다. 전화토론 등 방식을 오직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차적인 위치에 놓지 않는다.

이외에 화상회의, 전자메일 등을 심사관과 출원인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새로 추가하여 심사관과 출원인의 교류를 편리하게 하였다.

또한 심사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관에게 전화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에 대하여 강제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의 토론에서 심사관이 동의한 보정내용에 대하여 출원인은 해당 보정을 거친 서면서류를 모두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2) 인터뷰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제4.12절)

심사관과 출원인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인터뷰 진행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즉,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의견 차이를 해소하며 이해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불필요한 인터뷰로 인하여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출원인의 인터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을 나열하였다. 예를 들면 서면방식, 전화토론 등 방식을 통하여 쌍방이 의견을 이미 충분히 표현하였고 관련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된 경우이다.

동시에 인터뷰 진행 시기에 대한 규제를 적당히 완화하였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뷰 진행 시간을 1차 심사의견통지서 발급 이후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지만 실제 심사중에서 1차 심사의견통지서 발급 전에 인터뷰 진행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특히, 출원한 기술방안이 매우 복잡하여 1차

심사의견통지서 발급 전에 인터뷰를 통하여 현장에서 시범을 보여주거나 발명 기술방안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인터뷰는 심사관이 발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객관적인 사실 인정과 종래기술와의 대조에 도움되며, 출원인이 1차 심사의견통지서에서 곧 제기되는 심사의견의 사실기초와 이유를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은 심사관과 출원인이 실제심사 절차 중의 임의의 절차에서 인터뷰를 초대 또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6. 인류 배아 줄기세포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제2부분 제1장 제3.1.2절, 제2부분 제10장 9.1.1절)

최근 몇년간, 인류 배아 줄기세포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일부 혁신 주체는 인류 배아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 요구가 날따라 간절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요구에 순응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 법률법규의 제한과 해외 특허청 관련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기초상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체내 발육을 거치지 않은 수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인류 배아 분리 또는 줄기세포 획득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를 더이상 특허법 제25조를 이유로 완전한 배척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제2부분 제1장 제3.1.2절의 “인류 배아의 공업 또는 상업 목적의 응용”에 대하여 배제성 규정을 추가하였다. 즉, 발명 창조가 체내 발육을 거치지 않은 수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인류 배아 분리 또는 줄기세포 획득 기술을 이용한 것일 경우, “공중도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특허권 부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행 <가이드라인> 제2부분 제10장 제9.1.1.1절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9.1.1.2절의 내용에서 “인류 배아 줄기세포는 각 형성 및 발육 단계의 인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7. 무효심판 절차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제4부분 제3장 제3.3절)

신청인의 신청권을 손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신청인의 각 증거의 구체적인 결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건의 쟁점을 강조하고, 심사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쌍방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쌍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무효심판 절차에서는 “신청인이 여러개의 인용문헌을 제출하여 결합 대조방식을 사용할 것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두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결합방식이 존재할 경우, 가장 주요한 결합방식에 대하여 우선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장 주요한 결합방식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을 경우, 제1조 인용문헌의 결합방식을 가장 주요한 결합 방식이라고 목인한다”라고 명확히 하였다.

8. 3가지 특허출원의 심사절차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제2부분 제8장 제3.4절, 새로 추가된 제5부분 제7장 제8절)

1) 3가지 특허출원의 심사절차를 집중적으로 규정(제2부분 제8장 제3.4절, 제5부분 제7장 제8절)

3가지 특허출원의 심사절차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제2부분 제8장 제3.4절을 삭제하고 제5부분 제7장에서 제8절을 추가하였다.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출원의 심사 순서의 일반원칙, 우선심사절차, 지연심사절차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집중적인 방식으로 규범화 하였다.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실체심사의 경우에 대하여서도 새로 추가된 제5부분 제7장 제8.4절에 집중되어져 있다. 이외에 특별히 “발명 특허출원에 대하여 통상 심사청구 제출의 선후순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속행심사와 분할출원 심사의 심사순서에 대하여서는 더이상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다.

2) 동일 날자 출원 중 발명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할 수 없다(제5부분 제7장 8.2절)

동일 날자 출원(오직 출원일을 말함)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과 발

명을 모두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실용신안의 등록주기는 발명 우선심사의 등록주기보다 짧기 때문에 동일 날자 출원 중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신속하게 등록되는 상황에서 동일 출원 중의 발명 특허출원에 대하여 또 우선심사를 진행할 경우 우선심사 행정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에서는 동일 날자 출원 중의 발명 특허출원에 대하여 통상 우선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2017)과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특허출원의 종류를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으로 확대하였다.

3) 지연심사 절차를 추가(제5부분 제7장 제8.3절)

<“13.5” 국가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운용 계획 및 그 중점과업에 대한 분담방안>에서의 “심사주기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 주체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요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현행 <가이드라인> 제5부분 제7장에 제8.3절을 추가하였으며 지연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지연심사의 신청시기와 기간을 명확히 하였다.

발명 특허출원의 지연심사 신청시기를 심사청구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한정하고 발명 특허출원의 지연심사 신청은 심사청구 유효일로부터 유효하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지연심사 신청은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연심사의 기한은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일 수 있다. 필요시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심사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출원인이 제출한 지연심사 신청은 미제출로 간주한다. 그 중 “필요시”는 통상 국가이익 또는 공중이익에 영향을 주는 특허출원을 말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직권에 따라 해당 특허출원의 지연에 의한 기다림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심사절차에 진입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9. 비용납부 정보 보완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제5부분 제2장 제7절)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출원인이 우체국 또는 은행송금 방식으로 특허비용을 납부할 시 필요한 납부 정보를 누락할 경우, 팩스 또는 전자메일의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출원인의 납부 정보 보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에 <특허 비용 납부 정보 온라인 보완 및 관리 시스템>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납부 정보를 보완하는 비율은 95%이상 도달하였다. 팩스와 전자메일을 사용하는 비율은 점점 하강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보완 후 팩스 또는 전자메일의 방식으로 중복하여 보완한다. 이로 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복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효율이 낮추어졌다. 때문에 팩스 또는 전자메일 방식으로 납부 정보를 보완하는 것을 취소하고 통일적으로 특허 비용 납부 정보 온라인 보완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특허 비용 납부 정보를 보완하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가이드라인>에서의 “특허청이 규정한 방식 및 요구”와 같은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 정보 보완방식은 적시에 공고의 방식으로 별도로 공개한다.